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1/ 15 통권 171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국가경제·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인증의 개념과 범위해석
- 건물 외벽 장비반입구 설치공사 회계처리
- 컨테이너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문의의 건
-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의
- 계약에 의한 객실 추가 보상비
- 어음의 회계처리
-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국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아님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결혼과 출산의 세무상 혜택점과 불리한 쟁점>

과세쟁점들	결혼, 출산 등의 세무상 유리한 점, 불리한 점들
부부 별도 과세	부부간에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 명의 별도·독립 관리시, 종합소득 별도 과세, 합산 안함
배우자공제	소득 없거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소득공제 150만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2명 기본 연 35만원 + 초과 1명당 연 30만원 세액공제 적용
출산연도 세액공제	출산 1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자녀증여공제	모든 자녀별로 10년 기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적용함
혼인증여재산공제	자녀 혼인시 일반공제에 더해 1억원 추가공제 적용함(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적용)
배우자증여공제	배우자간 증여시 소급 10년 기간 합산액 6억원씩을 증여공제 가능함
법인설립공동주주	법인설립자본금을 부부가 공동출자하면 향후 배당소득 분산으로 저율 과세됨
공동창업급여분산	법인, 개인사업자의 공동창업 후 실제 근무시 배우자급여의 비용처리로 낮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① 1세대는 결혼한 가족이 기본임(30세 이상 소득자나 이혼자도 1세대임) ② 30세 미만, 미혼자는 과세(1세대 1주택 적용안됨)
혼인 2주택 비과세	각자 1주택 보유자의 결혼으로 2주택 되면 5년내 먼저 양도주택 비과세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10호 / 주간 3호

2025. 1. 15.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결혼과 출산의 세무상 혜택점과 불리한 쟁점	표지
긴급 시사해설	국가·경제·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인증의 개념과 범위해석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건물 외벽 장비반입구 설치공사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컨테이너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문의의 건 -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의 - 계약에 의한 객실 추가 보상비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어음의 회계처리	7
매일 절세 재무요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기준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R&D 및 투자세액공제	9 10
직장인 Survival	건설적인 면담을 실현하는 4단계	11
최신 판례예규 (이러저런유권해석)	-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법규법인-352, 2024.06.13)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재산-309, 2024.06.17)	12 13
세정 뉴스와 해설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무엇'... 결혼·출산·기부금 공제 체크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국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아님	13
세무정보	-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국가·경제·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인증의 개념과 범위해석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사회가 자유민주화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조직·법인·공공기관·개인의 회계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떤 업무라도 회계가 불투명하면 불신이 확산되고, 부정, 부패가 만연하여 모든 조직이 정상가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종 법인과 정부조직·공공법인 및 공익사업비의 지출투명성에 대한 결산서외부감사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점증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지출비용에 대한 “회계감사” 개념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업무수준을 낮추면서 감사권이 없는 세무사도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적절하다는 판결까지 하여 회계투명화에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공인회계사 단체들과 변호사회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영리·비영리·공공·공익조직 모두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오히려 평지풍파 환기되는 계기가 되는 듯하다.

필자가 공인회계사가 아니면 본 내용의 정당성과 중립성이 자동 인정되겠지만, 청년회계사들의 미래를 위한 걱정차원에서 쓰는 입장이라서, 회계투명과 감사증명개념에 대해 법규정의 문리적 차원에서만 분설해 보고자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회계사에게 회계업무, 회계감사·감정·증명업무, 세무대리와 경영자문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대리업무를 9개 호에 걸쳐 상세히 포괄열거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감정·증명업무는 독립된 외부 제3자의 업무이며, 감사는 감독과 조사의 합성이라 할 수 있는데, 내부통제검토·실사·외부조화·분석적검토·증거검사·증빙대사 Big Data분석 등의 여러 절차로 이루어진다. 감사의뢰한 바로 그 타인을 의심하면서 감독·검사·조사하는 것이므로,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엄격한 직무제한이 촘촘히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제시하는 대로 대신하여 업무를 순응집행하는 것이므로, 감독 + 조사라는 의심기반 감사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다. 상투적 표현을 빌리자면, 세무대리는 납세자 본인뜻대로 실행하는

합법적 대필행위이다. 따라서 독립성에 관련된 직무제한이 복잡하게 많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회계사의 감사업무에 필수적인 세금계정검증을 위해서, 세무대리와 세무조정업무는 자동으로 부수되어 따라온다. 그러나 세무대리는 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에 국한하여 “대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불법세무행위나 부적절한 상담자문은 “적법세무대리행위”가 아니고, 탈세공모, 공범, 조세범죄협조 등 조세법에 불과한 일탈행위로 형법이나 조세범처벌법이 바로 적용된다.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회계이론, 경제학, 재무관리, 경영학, 상법, 세법, 회계감사 등을 학습해야 합격가능하지만, 세무사는 회계기본, 재정학, 세법, 상법 등을 학습하면 합격한다. 세무사는 감사·감정·증명업무에 필수적인 경영학과 회계감사를 학습할 필요가 없어, 복잡한 기업경영의 회계감사지식과 경험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감사·감정·증명·인증·검토·검사 등 조사나 회계감사기법이 일부라도 적용되는 어떠한 종류의 인증행위(assurance)도 해서는 안 되고, 세무대리직역으로만 적법업무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 회계사의 인증업무유형과 세무대리업무를 알기 쉽게 비교표로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조직의 회계를 외부독립인 제3자의 의심·관찰·인증함이 감사·인증확인이지만, 세무대리는 독립제3자의 의심·인증행위가 아님>

업무유형단어	업무방법 핵심, 공인회계사법의 개념, 세무사법 규정 등
외감법 감사	독립된 외부 제3자의 공정성실감사행위(회사 등 외감법), 독립성개념 엄격 준수
회계감정	특정 조직의 회계와 재무제표를 외부독립 제3자가 감사측정함(감사에 준함)
회계증명	특정 조직의 회계와 재무제표를 외부독립 제3자가 증명함(감사에 준함)
회계검토	특정 조직의 회계와 재무제표를 외부독립 제3자가 독립적으로 검토(감사의 일종)
재무제표검사	특정 조직의 회계와 재무제표를 외부독립 제3자가 검토 조사함(감사의 일종)
회계인증	Assurance, 특정 조직의 회계와 재무제표를 외부독립 제3자가 조사·분석·인정하고 증명함(감사 등 포괄개념임)
결산서 검사	회계행위를 통해 결산서가 작성되므로 "검사"라는 용어를 써도 감사의 일종임
위탁정산	특정 조직의 외부사업비·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규정충족, 적정성과 증빙 정확성 등 대조(위탁자가 감사라고 표현하며 발주함)

회계확인	확인이라는 개념도 제3자의 확실한 인증 행위임(감사에 준함), 법인세·소득세법규정상 성실신고확인은 제3자독립성규정이 없는 예외현실임.
세무대리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2호, 세무사법 제2조에 포괄규정됨 : 조직, 법인, 개인과 독립된 외부 제3자의 감사개념이 아니고, 납세자 본인의 위임사무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대필행위임, 독립성 규정 없음

근간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개정내용의 기본골자는 세무사가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감정사 등 여러 전문직업의 고유업무까지 무한확장하려는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 다른 전문직업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전국민과 법인사업자, 개인납세자 등의 업무수요가 가장 많은 영역이 “세무대리”분야이다. 따라서 세무사가 납세자숫자×보수가격의 수익확대를 꾀한다면, 세무대리업역에서 수요자 확장법률제도와 가격현실화 인상규정의 측면을 더욱 철저히 천착발전시키는 것이 집중과 선택논리상 더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3일 (금)	1월 6일 (월)	1월 7일 (화)	1월 8일 (수)	1월 9일 (목)
미 달 러 (USD)	1468.30	1466.80	1470.80	1455.40	1453.20
일 본 엔 (JPY)	932.19	931.60	932.48	920.00	917.51
영 국 파 운 드 (GBP)	1817.76	1822.21	1840.93	1815.68	1796.66
캐 나 다 달 러 (CAD)	1019.16	1015.40	1026.16	1013.16	1010.75
홍 콩 달 러 (HKD)	188.80	188.57	189.16	187.15	186.79
중 국 원 (CNH)	200.57	200.09	199.85	198.25	197.89
유 로 화 (EUR)	1507.43	1511.39	1527.79	1505.10	1499.41
호 주 달 러 (AUD)	910.86	911.62	917.93	906.86	902.95
싱 가 폴 달 러 (SGD)	1071.67	1070.19	1078.62	1066.81	1062.4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7.86	325.96	326.05	324.32	322.75

건물 외벽 장비반입구 설치공사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Q 당사는 건물 외벽에 장비반입구 (스태킹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1차 외벽 기존 판넬 철거(거래처A) → 2차 스태킹도어 설치 (거래처B) → 3차 판넬 마감(거래처A)
 거래처 A : 4,000,000
 거래처 B : 6,000,000
 거래처 C : 300,000(스카이라)
 총 10,300,000원으로 자산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자산으로 인식하는게 맞을까요?

A 건물과는 별개인 "건축물부속설비"라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문의의 건

Q 컨테이너 취득 또는 임차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및 납부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컨테이너 1~2동을 취득(임차) 시 컨테이너 안에 에어컨 및 부속설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컨테이너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이후에 추가 부속설비를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설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는지?(이미 컨테이너 취득신고를 한 이후에 추가 설치한 부분이므로 취득세 추가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지)
3. 취득세 신고시기에 대해 1년 이상의 사용이 예상되더라도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내지 않고 최초 축조신고 시 사용기한을 1년미만으로 신고한 후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는지?

A

1. 가설건축물만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에어컨 등의 부속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부속설비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설비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예상되면 취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 1년 초과시점에 하는 경우 가산세

- ≡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의

Q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하고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오래전에 고객사에 납품한 재고를 고객사에서 판매하기 위해 당사 부품 교체 및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납품한것이 아니고 단지 제품 안에 부품을 교체한것인데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별도의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최초 납품계약에 따라 부품 무상교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제품납품후 해당 제품에 대한 별도의 부품교체 거래의 경우로 부품교체비용을 추가로 받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매출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에 의한 객실 추가 보상비

Q 계약 조건에 일정 보증 객실수 사용에 대한 조항이 있고 보증 객실수에 미달 하여 추가로 객실비를 정산 한다면 해당 보상비는 위약금으로 보아야 될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A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귀사의 경우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약된 것이 아니고 일정 수량에 대한 보증조건에 따른 정산비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어음의 회계처리

상담실 백종훈 차장

어음이란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특정한 장소 및 날짜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한 유가증권으로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발행자가 수취인에게 약정한 기일과 장소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약속한 약속어음이다.

이렇게 어음이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어음 자체가 대금의 결제에 대한 보증력이 강하면서도 결제일 이전에도 할인 또는 배서양도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의 회계처리

어음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음거래의 결과로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것인지 또는 원자재나 상품 등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어음의 계정 및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되므로 어음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통상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는 '받을어음'(또는 매출채권)계정의 차변에 기재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는 '지급어음'(또는 매입채무)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 제품을 납품하고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차)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10,000	대) 매출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 원자재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차) 원자재	100,000	대) 지급어음(또는 매입채무)	110,000
부가세대금	10,000		

어음의 배서양도 및 할인시의 회계처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어음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데 이를 배서라고 한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만기일전에 상품매입대금이나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바,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받을어음(또는 매출채권)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여 회계처리 한다.

▶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현금	100,000	대)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00,000
-------	---------	-------------------	---------

또한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만기일 전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을 금융기관에 배서양도하고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한다.

즉, 어음할인이란 어음의 만기금액을 할인받은 시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므로, 어음의 할인으로 인하여 수취할 금액은 어음의 만기금액에서 할인받은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어음할인에 따른 차감되는 할인료는 그 성격이 어음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 등에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라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통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개념보다는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 어음할인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	99,000	대)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기준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본다.
 - ① 인수·매입한 자산이 사업개시 당시(토지 +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 ②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일 것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배당 ETF 투자 시 과세 현황

일반계좌		연금계좌
배당소득세	세금구분	연금소득세
15.4%	세율	3.3~5.5%
배당·이자·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 최대 45%	종합과세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16.5% 분리과세 가능
부과	지역건강보험료	미부과



R&D 및 투자 세액공제

구분(%)	R&D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당기분				추가분	당기분				추가분 → 변경	
	대	중견 → 변경		중소		대	중견 → 변경		중소		
일반	2	8-15	8-20	10	-	1	5	5, 7.5	10	3	10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0, 25	12	최대 10	3	6	6, 9	12		
국가전략기술	30	30	30, 35	25		15	15	15, 20	25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구간		카드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0.50%	0.40%	△0.10%p
중소	3~5억원	1.10%	1.00%	△0.10%p
	5~10억원	1.25%	1.15%	△0.10%p
	10~30억원	1.50%	1.45%	△0.05%p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구간		카드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0.25%	0.15%	△0.10%p
중소	3~5억원	0.85%	0.75%	△0.10%p
	5~10억원	1.00%	0.90%	△0.10%p
	10~30억원	1.25%	1.15%	△0.05%p



건설적인 면담을 실현하는 4단계

면담에도 룰이 필요하다. 정해진 게 없이 면담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상사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일방적인 소통에 신뢰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대화 내용’과 ‘이야기하는 법’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 ① 일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미리 결정해 둔다. 평가항목 자체는 각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한다. ‘일의 책임을 자각하고, 항상 고객 제일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등의 항목이 있다.
- ② 각각의 항목에 대해 부하직원 본인이 자기채점을 한다. 부하직원이 1에서 결정한 항목에 관해 자기채점을 한다. 채점을 끝내면 그 숫자를 가린 채 상사에게 전달한다.
- ③ 상사가 각 항목에 관해 평가한다. 포스트잇을 붙인 상태(부하직원의 자기채점이 보이지 않은 채)로 이번에는 상사가 부하직원의 평가를 한다.
- ④ 서로의 점수를 비교하고 그 차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상사가 채점을 끝내면 포스트잇을 떼어내 서로의 점수를 확인한다.

직원의 자기채점과 상사의 채점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사가 ‘왜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가?’에 관해 설명한다. 두 사람 모두 낮은 점수를 매긴 부분은 쌍방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니 ‘어떻게 하면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 또 두 사람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 부분(특히 상사의 점수가 낮은 부분)은 ‘상사가 보고 있는 포인트’와 ‘부하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긋나 있는 것이니 우선은 그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

어쨌든 각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포인트가 명확해지고, 상사가 구구절절 설교할 일도 없어진다. ‘상사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면 부하직원도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어디를 수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최신 판례 예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법규법인-352, 2024.06.13

■ 질 의

-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계열제 외 이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 (질의2) <질의1>에서 단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 회 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사전법규법인-131, 2024.04.05

■ 질 의

- 소액주주 등 특정 지배주주1)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1)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 전단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1) 특정 지배주주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주등"을 말함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 전단의 규정은 아래와 같음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소액주주 등 특정 지배주주(특정 지배주주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

한 지분을 합산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재산-309, 2024.06.17

질 의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사업계획승인,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사업시행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매계약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 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사업시행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공급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이며, 그 조합원이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국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아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소득-3940, 2024.04.12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무엇'... 결혼 출산 기부금 공제 체크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다 챙기면, 달라진 세법 외에도 절세 요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지만, 계좌이체가 현금결제이기에 현금영수증에 따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의 공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다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총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35만원, 3명 60→65만원, 4명 90→95만원이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준시가 6억원 주택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는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공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40%를 적용한다.

올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넘게 쓴 돈에 대해서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

축의 경우 납입액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100만원 이상 부양가족은 간소화자료에서 제외한다. 기준은 상반기 부양가족의 소득이다.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60만명, 2월까지 연말정산하세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일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및 외국어 매뉴얼 등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연말정산 기한은 202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이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내려받기 없이 바로 회사에 간소화 자료가 전송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외에도 국세청 유튜브 채널 안내 동영상(영어),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를 통해 다양한 안내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하여,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후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025. 1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2025년 1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반응형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금융·재정·세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25.1.1.)

구 분 (%)	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당기분				추가분	당기분				추가분→ 변경	
	대	증견→변경	증소			대	증견→변경	증소			
일 반	2	8-15	8-20	10	-	1	5	5,7.5	10	3	10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0,25	12	최대10	3	6	6, 9	12		
국가전략기술	30	30	30,35	25		15	15	15,20	25		

-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초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중)

* 월 최대 2.4만원(5년간 최대 144만원) → 월 최대 3.3만원(5년간 최대 198만원)
 **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시 최소 5~10점 추가 부여

2. 교육·보육·가족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

원) 신설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1.)**을 확대
 -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 ** 자녀 1인당 월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35만원 → 자녀 1인당 월23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7만원

3.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25.1.24.)
 - *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
 - **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

4. 문화·체육·관광

-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 *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자·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 지정규모 : 50만m²이상→5만m²~30만m²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5. 환경·기상

-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 하고,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25.1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
 -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가 등 전주기적 과정의 관리·지원 및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7. 국토·교통

-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 (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8. 농림·수산·식품

-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24.11./'25.1.)
 - *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
 - ** (기존)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 가능 (변경)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9→15개)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73→76개)·지역(주산지→전국)* 확대('25.4./추후확정)
 - * 일부 지역(보험상품으로 도입시 위험산정이 어려워 주산지를 기준으로 도입)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확대

-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도모('24.10.)
 - *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9. 국방·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25년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55만원(기존40만원)으로 인상**(‘25.1.1.)

* 월 봉급 : (병장) 125→150만원, (상병) 100→120만원, (일병) 80→90만원, (이병) 64→75만원

** 18개월 복무, 월 55만원 납입시 총 2,019만원 적립 가능 : 원금(990만원) + 정부매칭지원금(990만원) + 은행 기본금리(5%, 39.2만원)

□ 방산기술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 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효력 부여(‘25.6.)

*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10. 행정·안전·질서

□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25.1.17)

* (악용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

□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미”*를 구축하여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제공(‘25년 중)

* 2025년부터 4개 분야(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등 80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서비스로 확대 계획

□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4.12.1)

* (기존) 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일반소방대상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변경) 특정소방대상물로 추가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설치 의무화

기획재정부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

구 분(%)	당기분			추가분 ¹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15 ²⁾	25	-
신성장· 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

2) (~3년)15%, (3~5년)10%, (5년~)8%

구 분(%)	당기분			추가분 ¹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20 ²⁾	25	-
신성장· 원천기술	20	20, 25 ³⁾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⁴⁾	4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

2) (~3년)20%, (4~5년)15%, (6년~)8%

3) (~3년)25%, (4년~)20%

4) (~3년)35%, (4년~)30%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주요내용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 (인건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적용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 ❖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문화상품 제작목적 한정 → 요건 삭제

개정내용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분 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구 분(%)	당기분			추가분 ¹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 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구 분(%)	당기분			추가분 ¹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5 ²⁾	10	10
신성장· 원천기술	3	6.9 ³⁾	12	
국가전략기술	15	15.20 ⁴⁾	25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2) (~3년)7.5%, (4년~)5%

3) (~3년)9%, (4년~)6%

4) (~3년)20%, (4년~)15%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분 공제율 상향 〉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주요내용 :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증가분 공제율 상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초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광역시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②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③ (취득기한) 2024. 1. 4.~2026. 12. 31.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 추진배경 :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1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12억원 초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③ 전용면적 85m²,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 추진배경 :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 주요내용 : 1주택자가 2024.1.10.~2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m²,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① (전용면적) 85m² 이하
- ② (임대기간) 10년 이상
- ③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 ④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변경 전) → 2027년 12월 31일(변경 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임대주택 공급 지원
- 주요내용 :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 ❖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 ❖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❶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 ❷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 ❸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 ❖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 추징

-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 추진배경 :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합니다.

- ❖ (대상) ❶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 ②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 ③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 추진배경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 (공제금액)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 추진배경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총소득 기준)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 국채 등에 대해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시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하게 간소한 비과세 신청 절차를 적용합니다.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해당 국외투자기구 명의로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하위투자자별 정보를 취합할 필요 없이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또한, 기존에는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공모국외투자기구만 면제하였으나, 2025년부터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원천징수의무도 면제하여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번 개정은 사모·공모펀드를 구분하지 않는 국제 추세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선진화한 것으로서, 펀드 투자자의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또한, 2024년 10월 발표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

- 추진배경 : 국외투자기구 및 외국인투자자의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 공·사모국외투자기구 모두 비과세 신청 시 해당 펀드명으로 신청 가능
• 공·사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의무 해제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활성화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 및 기부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됩니다.

- ❖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단체는 기부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 추진배경 : 기부자의 납세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부금 단체의 경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대상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 ❖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이던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 ❖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및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p>〈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주요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재외국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조정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및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를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완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 ❖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미소명하거나 거짓소명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p>〈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완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율 인하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국채 등 비과세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외국인투자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국채 등 비과세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

- 추진배경 :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신탁 자료 제출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 ❖ 또한,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 추진배경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 주요내용 :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 설정 또는 재산 이전 시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납보완규칙의 시행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규칙 중 소득납보완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을 과세하는 소득납보완 규칙이 시행됩니다.

*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자회사 추가세액(실효세율 기준 15% 미달 분)을 과세

❖ 이는 추가세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들로 배분*하여 해당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배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납보완규칙의 시행 >

- 추진배경 :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 소득납보완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들에 납부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합니다.

❖ (환급대상) 가정용 부탄(기준), 수소제조용 부탄(신설)

❖ (환급세액) LPG 부탄과 프로판 간 차액*

* LPG 부탄(275원/kg)과 LPG 프로판(14원/kg) 간 세액의 차액(261원/kg)

개정내용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

- 추진배경 :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수소제조용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환급
- 시행일 : 202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2026년 말).

❖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조정합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조정내용〉

구분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현행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개정안	70만원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합니다.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 추진배경 :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 주요내용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 등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 면세유의 부정유통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 추진배경 : 유류 부정유통 방지
- 주요내용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5일 → 20일)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 추진배경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15일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기에는 준비기간이 부족
- 주요내용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 상향 조정

가산세 적용 합리화를 위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40% → 60%) 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 상향 조정 〉

- 추진배경 :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 부정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율 수준인 부족세액의 60%로 상향하여 법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유도할 필요
- 주요내용 : (부정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부족세액의 40% → 60%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①업종 우대감면을 적용기한 종료, ②수도권 감면을 축소, ③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 서비스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창업 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 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벤처 기업 등	5년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감면을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 주요내용 : 감면을 정비 등 제도 합리화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 세제 감면대상 축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

용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대상 축소 〉

- 추진배경 : 지역균형발전 지원
- 주요내용 :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대상 축소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납세협력 비용 절감과 세원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추진배경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능성을 낮추어 거래투명성 강화
- 주요내용 :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외국인관광객 등의 다양한 숙박 형태를 고려하여 환급 대상 숙박업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합니다.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30박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됩니다.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외국인관광객 등의 다양한 숙박 형태를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관광숙박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상자)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 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 추진배경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2027. 12. 31.)합니다.

-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 ❖ (적용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개인)
- ❖ (공제금액)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수준을 합리화합니다.

-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근로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7. 12. 31.)하되,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 조정*
 - * (공제율) 소득세액의 5% → 3% (교부금) 납부세액의 2~10% → 1~10%
-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교부금부터 적용합니다.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

- 추진배경 : 납세조합 세액공제·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 주요내용 :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근로자 공제율 축소(5% → 3%)
 - 납세조합 교부금 조정(2~10% → 1~10%) 및 사업자 교부금 폐지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2025년 1월 1일부터 기부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합니다.

- ❖ (대상)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 추진배경 :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 주요내용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연장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연간 2억 한도 비과세 등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연장 〉

- 추진배경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 주요내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등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지원
- 주요내용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제도 연장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감면요건 단축) 가입 최소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제도 연장 >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 주요내용 :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 감면요건 단축) 성과보상기금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근로자 → 3년 이상
 -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합니다.

-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600만원
 -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 400만원
- ❖ (공제기준 완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 (적용대상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8천만원
 - 공제한도 상향) 사업(근로) 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500만원 → 600만원
 - 1억원 이하자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 (공제금액) 50만원
- ❖ (적용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

- 추진배경 : 결혼비용 지원
- 주요내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024~2026년) 결혼세액공제 적용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홀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 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합리화
- 주요내용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 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명확화*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 (하반기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

- 추진배경 : 납세협력비용 완화
- 주요내용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명확화 및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정비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에 대한 분할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행) 건설기계(2018년 이후 취득)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개정안)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 추진배경 :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정요건인 과소신고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 * (현행)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 이상 과소신고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

- 추진배경 :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조정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대상)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 ① 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퀘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운영업,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블런스 서비스업, 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 추진배경 :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제고
- 주요내용 :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확대 및 정정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 ❖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

개정내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3개 업종이 추가되고 1개 업종이 정정됩니다.

※ 추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블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동물 장모 및 보호서비스업(13개)

정정: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1개)

-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을 연계한 통합심층평가 도입 〉

- 추진배경 :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통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필요
- 주요내용 : •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군에 대한 통합심층평가 도입
 - 통합심층평가 방법의 개선 및 평가결과 환류
- 시 행 일 : 2025년 3월 ~ 4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가 확대 시행됩니다.(부가령 제42조 제2호 아, 자목)

❖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으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자. 다른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 제조·수리,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없이 단순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과 적법하게 제공하는 도급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

- 추진배경 : 부가가치세 세원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 단순 인력 공급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현행)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 → 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 이후 1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 추진배경 :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II를 신설, 개편하였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유형	단일 유형	I유형	II유형(신설)
지원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지원기간	2년	1년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1,200만원 <2년> *720만원(60만원/월) + 2년차 480만원	720만원 <1년 지원>	720만원 <1년 지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	480만원 <2년> * 18·24개월차 각 240만원
목표인원	12.5만명	5.5만명	4.5만명

개편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II 신설 〉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산업(일자리TF<부처합동> 선정, 2023. 7.)
- 주요내용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760만원, 1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지원
- 시 행 일 2025년 1월 1일(예정)

2025년 적용 최저임금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휴 8시간 포함)입니다.
-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
 - 2025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시 행 일 2025년 1월 1일